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1. 8.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 명시,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조항 정비, 아동권리전담조직 및 실무추진단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와 일반원칙 구체적 명시(안 제2조, 제7조)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 나. 아동권리전담조직 및 실무추진단 설치 조항 신설(안 제13조2, 제13조3)
- 다. 종전의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를 의무규정(“해야 한다”)으로 개정(안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 제3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정보·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3조제1항 중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동친화도시를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달하도록 노력”을 “조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아동 예산 확보 및 분석) 시장은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을 “4년마다 수립”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동등한”을 “성별, 나이, 종교, 인종,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여가·문화생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홍보할 수 있다”를 “홍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를 “2년마다”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 · 사회단체 ·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 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제13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인 실무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실무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실무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실무 사항
4.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실무 사항
5. 그 밖에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된다.

④ 실무추진단의 단원은 아동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6조제3항제5호 중 “아동친화도시”를 “관할 교육지원청·법원·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3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제23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위촉·운영할 수 있다”를 “위촉·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u>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u> <u>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 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u> <u>다. 발달권: 신체적 · 정서적 · 도덕적 · 사회적 성장에</u>

3. ~ 7.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정보·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

② -----

----- 조달-----
-----.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

----- 지급하여
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생략)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제4조의2(아동 예산 확보 및 분석) 시장은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 4년마다 수립-----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

---.

1. ----- 성별, 나이, 종교, 인종,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

2. (현행과 같음)

3. ----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여가·문화생활 -----
-----.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

----- 홍보하여야 한다.

② -----

-----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①

----- 2년마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신 설>

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
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 · 사회단체
·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
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 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
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제13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인 실무사항을 검
토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
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
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u>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실</u> <u>무 사항</u>
	<u>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u> <u>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실</u> <u>무 사항</u>
	<u>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u> <u>및 홍보 등에 관한 실무 사항</u>
	<u>4.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u> <u>가에 관한 실무 사항</u>
	<u>5. 그 밖에 추진단에서 필요하</u> <u>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u> <u>이 되고, 부단장은 사회복지국</u> <u>장이 된다.</u>
	<u>④ 실무추진단의 단원은 아동</u> <u>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한</u> <u>다.</u>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	제14조(위원회 설치) ----- ----- ----- ----- 둔다.
제16조(구성) ①·② (생 략)	제1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	③ ----- ----- -----

회복지국장으로 한다. 1. ~ 4. (생략) 5. <u>아동친화도시</u> 유관기관 공무원 <신설> 제23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6조(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운영) ①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옹호관을 <u>위촉·운영할 수 있다.</u> ② ~ ⑤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u>관할 교육지원청·법원·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u> ----- 6. 제23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제23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 ----- ----- --- 둔다. 제36조(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운영) ①----- ----- ---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

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 카. (생략)

2. ~ 7. (생략)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2조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제3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이 인정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8조 당사국 정부는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제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서로간의 면접을 위해 출국이나 입국을 신청할 때 이를 신속히 받아들여 부모와 자녀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강제 해외 체류를 막기 위해 협정체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니며,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한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아동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아동은 평화로운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아동은 가족이나 가정,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명예에 대하여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제17조 모든 아동은 국내와 국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대중 매체는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를 지양하고 이익이 되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부모는 아동 양육에 공동 책임을 져야하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양부모나 보호시설 등을 제공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시설을 선택할 때는 아동의 인종이나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할 경우 당사국은 입양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위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당사국 정부는 난민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제25조 당사국 정부는 보호나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아동의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26조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

제30조 소수민족의 아동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누리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33조 당사국 정부는 마약 등의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약물의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복지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 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8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어서는 안되며, 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당사국 정부는 무력분쟁과 고문, 학대,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 정부는 형법상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과 타인의 자유에 대해 존중하는 생각을 키워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소 관 부 서		아동친화과
입 안 자	과 장	박 용 자
	팀 장	정 경 애
	담 당 자	안 정 래 (480-6563)